

#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  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기대,  
김달호, 김상훈, 김제리,  
노승재, 박기열, 송아량,  
유 용, 이광호, 이영실,  
이정인, 임종국, 최 선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외국인주민은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에 따른 주민임에도 불구하고, 생활안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급된 바 있으며, 추후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외국인주민에게 균등한 행정혜택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긴급 복지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

2021020400000008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여차민 팀장  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02.04

회신일 : 2021.02.04

내용문의 : 02-2180-7942

###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(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,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비용 등 발생할 수 있으나 ‘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※ 2020년 서울특별시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, 본 조례안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, 실제 지원시 지원방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